저장: 김세영 / 복지정책과 (2025-07-30 11:26:11)

등록번호 복지정책과-5422

등 록 일 2025. 2. 18.

결 재 일 *2025. 2. 18.*

공개구분 *대국민 공개*

주무관		행복동행팀장	복지정책과장		
			전결 2025. 2. 18.		
강희현		차화정	류욱환		
협조자					

2025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

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.

I

지원현황

(단위: 백만원)

	지 원 실 적							목 표 량	
구 분	2022년		2023년		2024년		2025년		
	세대	금액	세대	금액	세대	금액	세대	금액	
계	10	50	10	50	5	45	5	41.9	
신 축	-	-	-	-	-	-	-	-	
개보수	10	50	10	50	5	45	5	41.9	

Ⅱ 추진계획

- 지원근거
- 주거기본법 제3조의 7(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역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
-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의무)
- 사업기간 : 2025년 2월 ~ 8월
- O 사 업 량: 5세대(예산 범위 내 조절 가능)
- 예 산 액 : 41,960천원(군비)
 - 예산과목 : 복지정책과, 희망복지실현, 사회안전망 구축, 취약계층 주거환경

개선사업, 민간자본이전, 민간자본사업보조(402-01)

- O 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※ 수선유지급여대상자는 제외)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
-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(단,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결정 필요)
- 지원내용 : 화장실, 주방, 방 내부, 지붕개량, 보일러 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※ 신고나 인허가를 수반하는 개보수는 대상 제외

Ⅲ 지원방침

- 심사 기준표에 의해 대상자 선정
- O 미선정 세대는 관내 봉사단체 등을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추진 예정

Ⅳ 세부추진 일정

- O '25. 2. 19. ~ 2. 28. : 읍면 사업홍보 및 대상자 신청 접수
- '25. 3. 4. ~ 3. 5. : 신청 대상자 현장조사 및 군 자체 심의
- '25. 3. 6. ~ 3. 7. : 주거복지사업단 위탁 시행 계약 체결 및 확정 통보
- O '25. 3월 ~ 8월 : 사업시행 및 완료

Ⅴ 행정사항

- 복지정책과 : 주거복지사업단 위탁 시행 계약 체결
 - ※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16조(지역자활센터 등)에 따름
- O 읍·면 : 이장,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을 통한 적극발굴 및 홍보
- 붙임 1. 신청서 1부.
 - 2. 심사기준표 1부. 끝.